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205
------------	------

2024. 12. 17.
주택공간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4. 10. 16. 왕정순 의원 발의 (2024. 10. 18. 회부)

2. 제안이유

-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편향성,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글로벌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률 제정을 논의 중이나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국회의 인공지능 기본법률 제정을 촉진시키고

서울시 조례 운영 경험을 통해 현실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안 제1조~제2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9조~제10조)
- 사. 지원사업(안 제16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 이 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가. 조례 제정의 배경

- 최근 인공지능(AI¹⁾)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향후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분야 중 하나임. (위키백과사전_인공지능 정의)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의료·복지·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부터 과학적 난제 해결과 같은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영역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반면, 인공지능 기술은 모분포를 알 수 없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²⁾,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³⁾도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2019.12.17.)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국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⁴⁾을 필두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음(붙임2).

-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 진흥’과 ‘규제 수준 및 안정성 확보’ 사이에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⁵⁾되어 왔고, 고성능 인공지능의 위험이 과장되어 있다거나 법의 적용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법률 제정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⁶⁾.

-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는 22대 국회에서

2) “최신 AI 불확실성 정량화 동향 및 시사점” - AI Network Lab 인사이트 2022-14호_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12.)

3) “인공지능 윤리와 저작권의 규제체계 연구” -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_국회입법조사처(2024.9.28.)

4) 의안번호 2022593호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_이상민의원 대표발의(2019.9.23.)

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p.12~16, 2024.7.

6) “진흥이나 규제냐...AI 기본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경향신문, 2024.09.24.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안’, 붙임2)을 의결(‘24.11.26.)함에 따라 관련 법률안 제정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 등을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는 것임.
- 서울시는 2024년 4월 “AI 행정 원년”을 선포⁷⁾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이루고자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운영’ 등 45개의 사업에 대해 3년(‘24~‘26)간 2,0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붙임3).
- 참고로, 경기도는 지난 7월 인공지능 관련 부서(AI국)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등)⁸⁾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음.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

- 이 제정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7) “서울 인공지능(AI) 행정 원년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계획” 2024.3.26. 시장방침 제22호 (정보시스템담당관-5947

8)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2024.7.18. 제정),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23.10.11. 제정),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24.10.11. 제정),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2024.10.11. 제정)

사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구 분	조 항	내 용
안 제1조 ~ 안 제3조	목적, 기본원칙, 정의 등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 안정적인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안 제4조 ~ 안 제7조	시장의 책무	·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마련 · 행· 재정적· 기술적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 인공지능 정책의 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시책 · 재원 조달, 신뢰 기반조성, 윤리원칙 확산 ·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가이드라인	·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안 제8조 ~ 안 제15조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역할)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고위험영역 규율 등 · (구성) 15인 이내 : 공무원,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 (운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안 제16조 ~ 안 제17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교육, 창업 등

(1) 용어의 정의(안 제3조)

- **안 제3조**는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안’⁹⁾에서 동일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바, 그 용어와 설명의 정합성을 맞추어 필요가 있음.

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 인공지능 정의 관련 비교표 〉

제정조례안	‘인공지능 기본법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가. ~ 차.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3. “고위험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2) 기본계획(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에게 인공지능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토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확산 방안,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인공지능이 큰 틀에서 ‘지능정보기술’¹⁰⁾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을 “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줌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시책 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 6.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동향 조사 및 평가 7. 그 밖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또한, 수립주기와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안’ 상 정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잠재적 영향력과 광범위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당기는 방안(5년→3년)도 검토해 볼 수 있음.

(3)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장에게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으로, 최근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 개인 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 환경이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인공지능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지고,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¹⁾.
-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안’에서는 정부가 인공지능 윤리원칙(가이드라인 역할)을 제정·공표 수립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와 연계성 및 정합성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¹²⁾에 따라

11) 현재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에 대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부재하며,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12.)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4. 2.)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만 가이드라인이 존재함.

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관련 법령의 제정과 정부 차원의 원칙, 표준 가이드라인안 등이 선행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바¹³⁾,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가이드라인)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가이드라인) ----- ----- ----- ----- 수립·시행할 수 있다.

(4) 인공지능위원회(안 제8조~안 제15조)

○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¹⁴⁾.

- 인공지능위원회의 경우, 이제 신설되는 사안인 만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의 분과 위원회로 우

제27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공지능윤리기준(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법령, 기준,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말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및 제2항에 따른 실천방안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13)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도시국은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직접 수립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입장이나, 이는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이용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여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이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14)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선 운영한 후 안정화 시기에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이용 및 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규율,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7.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에 인공지능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한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 명백한 사유(법정 상시 위원회 등)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명시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¹⁵⁾ 이를 신설해야 하며, 그 기한은 현행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존속기

1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한16)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6조·제17조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제18조 (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와 같음)

(5) 지원사업(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인공지능기술의 국·내외 동향 등 조사, 연구·개발, 전문인
력 양성, 창업·기업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이며, 각 자치구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5.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 6.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인공지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기술의 동향 보고
서17)를 발간(서울디지털재단)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실증 지원(경제정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9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17) SDF AI 동향 보고서_서울디지털재단_2024.9월호

책실 경제정책과, 붙임5)과 “서울 AI 허브” 운영¹⁸⁾(경제정책실 첨단산업과)을 통한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 중이나, 별도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연계 또는 일원화하여 인공지능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 등의 효과와 인공지능 정책을 선도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현재 관련 법 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추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위임사항 반영¹⁹⁾ 등 법령 시행에 맞춰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조례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음.
- 한편, 서울시는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수립(디지털도시국)과 사업 지원(경제정책실)의 추진부서가 상이하여 장기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음.

의안심사지원팀장	강 대 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김태훈	02-2180-8203

18) “2024년 서울 AI 허브 운영계획” _2024.3. 첨단산업과-2645

19)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에 대한 지원과, 집적단지 지정, 기술의 실증기반 조성, 민간 사업 투자에 필요한 조치 등을 위임하고 있음.

[붙임1] 관계법령 (p.14)

[붙임2]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_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17)

[붙임3]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계획 개요 및 연차별 예산(서울시 방침) (p.18)

[붙임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주요내용 (p.21)

[붙임5] 2024년 테스트베드 서울 중 인공지능 기술 선정과제(p.28)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각 분야별 정책
4. 시민, 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5. 정보보안, 이용자 권익 보호
6.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
7. 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장,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 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회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2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_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구분	연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의결
20대	1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2019.09.23.	임기 만료 폐기
	2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경진의원	2019.11.21.	
21대	1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2020.07.13.	임기 만료 폐기
	2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양향자의원	2020.09.03.	
	3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2020.10.19.	
	4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2020.10.29.	
	5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안민석의원	2021.05.17.	
	6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필모의원	2021.07.01.	
	7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이용빈의원	2021.07.19.	
	8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의원	2021.11.24.	
	9	한국인공지능·반도체공과대학교법안	안민석의원	2022.04.18.	
	10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조해진의원	2022.08.24.	
	1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윤두현의원	2022.12.07.	
	12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의원	2023.02.28.	
	13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	안철수의원	2023.08.08.	
22대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의원	2024.05.31.	대안 반영 폐기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2024.06.17.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2024.06.19.	
	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2024.06.19.	
	5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2024.06.28.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2024.07.04.	
	7	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의원	2024.08.22.	
	8	인공지능책임법안	황희의원	2024.08.27.	
	9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의원	2024.08.28.	
	10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의원	2024.09.12.	
	11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우영의원	2024.09.24.	
	1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현의원	2024.10.29.	
	13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황정아의원	2024.11.01.	
	1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의원	2024.11.11.	
	15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2024.11.11.	
	16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최민희의원	2024.11.14.	
	17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이인선 의원	2024.11.18.	
	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이인선 의원	2024.11.18.	
	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2024.11.18.	
	20	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2024.11.20.	

□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
목표

인공지능(AI)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매력도시 서울 조성



추진
전략
·
과제

3대
전략
45개
과제

<전략1> 신뢰받는 인공지능(AI) 행정 기반 마련 3개 과제

AI 사업 지속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1-① AI 사업 총괄 기능 정비 및 AI 안전성 가이드 마련
- 1-② AI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지원 강화
- 1-③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

<전략2>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이용환경 조성 4개 과제

AI 활용 업무 혁신을 위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2-① AI 정보 공유 채널 운영
- 2-② 생성형 AI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
- 2-③ AI 신기술 이용료 지원
- 2-④ AI 활용도 제고 위한 프롬프트 학습 동아리 운영

<전략3>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가속화 4개 분야 38개 과제

AI 행정 활용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3-① AI 약자와의 동행(8개)
- 3-② AI 매력서비스 확대(10개)
- 3-③ AI 안전망 조성(12개)
- 3-④ AI 업무방식 혁신(8개)

□ '24~'26(3개년) 「인공지능 매력도시 서울」 총예산 : 2,064 억원

'24년 “AI 행정 혁신 가속화” 추진과제 예산

I. AI 약자와의 동행

43.5 억원

II. AI 매력서비스 확대

51 억원

III. AI 안전망 조성

442 억원

38개 추진과제
총예산

550 억원

IV. AI 업무방식 혁신

13 억원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계	'24	'25	'26
합 계		206,427	55,073	80,178	71,176
1. 신뢰받는 AI 행정 기반 마련					
1	AI 사업 총괄 기능 정비 및 AI 안정성 가이드 마련<신규>	-			
2	AI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 지원 강화<신규>	-			
3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마련<신규>	-			
2.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AI 이용환경 조성		328	50	129	149
4	AI 정보공유 채널 운영<신규>	-			
5	생성형 AI 교육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	205	30	80	95
6	AI 신기술 이용료 지원<신규>	123	20	49	54
7	AI 활용도 제고 위한 프롬프트 학습 동아리 운영<신규>	13		6	7
3. AI 행정 혁신 가속화		206,099	55,023	80,049	71,027
3-① AI 약자와의 동행		13,605	4,351	4,013	5,241
8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운영<새비 보조사업>	1,965	594	653	718
9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분석 시스템 운영	108	15	70	23
10	지하철 엘리베이터 AI 자동 호출 시스템 구축	-	공모		
11	온라인 불법·유해 콘텐츠 AI자동 검출 시스템 구축<신규>	399	199	100	100
12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운영	752	352	200	200
13	AI 기반 119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신규>	4,336	1,336	1,000	2,000
14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3,800	1,200	1,200	1,400

15	서울형 교육플랫폼 맞춤형 추천 서비스 운영	2,245	655	790	800
3-② AI 매력서비스 구축·운영		24,693	5,129	14,424	5,140
16	120 스마트 인공지능 상담센터 구축	8,000	1,500	6,500	-
17	서울시 대표 챗봇 '서울톡' 운영	941	341	300	300
18	상수도 AI 콜봇 민원상담 구축	1,800	61	839	900
19	생성형 AI 기반 서울시 공공데이터 챗봇 구축<신규>	9,648	2,148	5,000	2,500
20	생성형 AI 기반 All-In-One 서울 챗봇 구축<신규>	1,360	-	880	480
21	지하철 이용상담 외국어 동시대화 시스템 구축<신규>	323	323		
22	생성형 AI 기반 서울관광 다국어 챗봇 구축<신규>	572	122	200	250
23	AI 면접체험·역량검사 프로그램 운영	960	300	330	330
24	청년몽땅정보통 맞춤형 서비스 운영	1,011	311	350	350
25	서울식물원 서비스로봇 운영	78	23	25	30
3-③ AI 안전망 조성		163,773	44,212	60,273	59,288
26	AI 기반 방법용 지능형 CCTV 확대 추진	126,500	32,200	46,300	48,000
27	AI 기반 ICT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신규><국비사업>	204	68	68	68
28	민간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기술 지원사업	681	227	227	227
29	인파밀집 실시간 예·경보 시스템 운영<세비보조 '23년 설치완료>	-	[자치구운영]		
30	AI 기반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 구축	3,992	1,246	1,246	1,500
31	인공지능 하수관로 결함탐지시스템 구축	1,122	112	505	505
32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운영	10,421	3,385	3,473	3,563
33	스마트교차로 구축 사업	1,014	814	100	100
34	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3단계) 구축	300	100	100	100
35	서울 지하철 역사 스마트 스테이션 구축	9,560	3,360	3,350	2,850
36	도시철도시설 드론관제 시스템 구축<신규>	9,479	2,200	4,904	2,375
37	AI 기반 지하철 혼잡도 관리 시스템 구축<신규>	500	500	-	-
3-④ AI 업무방식 혁신		4,028	1,331	1,339	1,358
38	생성형 AI 기반 소형언어모델(sLLM) 개발<신규>	84	84		
39	직원용 업무 챗봇 '서우리주무관' 운영	1,026	336	340	350
40	RPA기반 업무자동화시스템 운영	273	55	109	109
41	응답소 민원분석시스템 운영	875	275	300	300
42	지능형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735	236	245	254
43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시스템 운영	123	41	41	41
44	인공지능 기반 보안관제 플랫폼 운영	810	270	270	270
45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AI 대응시스템 운영	102	34	34	34

붙임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대안) 주요내용****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200053	안철수의원	2024. 5. 31.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 회의(2024. 7. 16.)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200543	정점식의원	2024. 6. 17.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 체회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200673	조인철의원	2024. 6. 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 체회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200675	김성원의원	2024. 6. 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 체회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2201158	민형배의원	2024. 6. 28.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 체회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 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201399	권칠승의원	2024. 7. 4.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 8.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 기본법안	2203072	한민수의원	2024. 8. 22.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책임 법안	2203235	황희의원	2024. 8. 27.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2203297	배준영의원	2024. 8. 28.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2203960	이훈기의원	2024. 9. 12.	소위원회 직접 회부 (공청회 실시, 2024. 9. 2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04250	김우영의원	2024. 9. 24.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205013	이정헌의원	2024. 10. 29.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2205189	황정아의원	2024. 11. 1.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205457	이해민의원	2024. 11. 11.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5458	정동영의원	2024. 11. 11.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205569	최민희의원	2024. 11. 14.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205639	조승래 · 이 인선의원	2024. 11. 18.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5643	조승래 · 이 인선의원	2024. 11. 18.	소위원회 직접 회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2205648	정희용의원	2024. 11. 18.	소위원회 직접 회부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1.)에서 이상 19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6.)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함(안 제6조).

라.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음(안 제23조).

자. 정부는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성·신뢰성, 접근성, 사람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인·기관·단체 등이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0조).

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함(안 제31조).

타.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안 제32조).

파.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안 제34조).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40조).

붙임5
2024년 테스트베드 서울 중 인공지능 기술 선정과제 경제정책과

연번	과제명	주관기관	실증기관	시지원금
1	AI 기반 아동 심리·지능 검사 및 해석 서비스와 검사 결과 관리 프로그램	주식회사 인사이터	관악구 복지가족국	300
2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AI 검진 서비스	팀엘리시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료교육국	300
3	서울 방문 관광객의 동선과 행동을 NFC 기반으로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K뷰티트립 플랫폼: AI 분석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	(주)바닐라컴퍼니	경제실 뷰티패션산업과	300
4	AI 생체인식으로 잃어버린 반려동물의 신원 확인 가능 기술	주식회사 펫나우	관악구 기획경제국	300
5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멀티 페르소나 기반의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사	(주)닥터송	서초구 밝은미래국	300
6	AI 기반 노후 도로구조물 건전성 관리 및 보수보강 방안 실증	주식회사 세연아이앤씨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본부	294
7	AI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 적용 디지털트윈 서비스	마인즈앤컴퍼니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300
8	AI 진단 기능을 활용한 호흡기 질환(폐렴) 원격 진단 시스템	주식회사 닥터스바이오텍	구로구보건소 (협조) 구로구 복지지원국	300
9	걷기 기반 의료 취약계층 만성질환 위험도 AI 예측 서비스	넛지헬스케어 주식회사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300
10	치매건강검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진단보조 소프트웨어	주식회사 뉴큐어엠	(사)한국건강 관리협회	350 (민간)
11	관광 및 쇼핑 분야에 적용 가능한 AI AR 실감 솔루션 기술	(주)팝스라인	현대백화점 면세점	350 (민간)
12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생성형 AI기반 상업용 공간 이미지 생성 및 편집 기능	주식회사 마이공사	(주)플루에잇 스튜디오	350 (민간)